



금산군의회
GEUMSAN COUNTY COUNCIL

2026. 4. 21.(화)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

의안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48호
- 제 출 자 : 금산군수
- 제 출 일 : 2026. 4. 10.
- 회 부 일 : 2026. 4. 10.

2. 제안이유

-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입주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정비(별표 1)
-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임대차계약서 정비(별지 제1호서식)
- 띄어쓰기 등 조문 재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기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3019)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2842)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6931)
 - 입법예고(2026. 2. 20. ~ 2026. 3. 12.) :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신규주택 건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마을 관리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2조에서는 입주대상을 아토피 또는 천식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가족으로 구체화하고, 자녀가 금산군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전학 예정인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일치 및 유지 의무를 신설함. 이는 공유재산의 목적 내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상 타당성은 인정되나, 신설된 제3조제7호 정의에는 ‘어린이집·고등학교’가 포함됨에도 입주자격 조항에서는 ‘어린이집·고등학교’가 제외되어 있어 조문 간 정합성 결여 및 평등원칙 저촉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7조에서는 기존의 ‘의회 동의를 얻은 위탁약정 체결’

절차와 ‘5년 이내 위탁기간·1회 연장’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 자격을 ‘주택관리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으로 확대함. 그러나,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사무는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제5호의 “보건·건강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 위탁 기간 등 계획 수립, 수탁 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등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후단 안 제22조 다른 조례의 적용에 명시하였으나, 의회의 동의 부분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 위탁기간 5년 제한 조항은 확인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조례의 완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에서는 제2항의 수탁자의 “결산수입금액의 20% 수리·수선비 적립 의무”를 삭제하고, 제4항에 재산의 타인 양도·전대 금지 및 군수 승인 시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음. 이는 「공유재산법」 제27조제5항에 부합하는 개정이나, 시설 노후화 대비 재원 확보 수단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 대체 재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